

Phase 01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판사에게 진솔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판결에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때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있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하거나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솔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며,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도덕의 딜레마와 진솔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미국의 사법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법 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가 거론된다. 전자에 의하면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사안에 법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으며, 판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의무만 있다. 후자에 의하면 법은 곧 정치이고 판사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판사는 재판 중에 법 외적 고려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판사들이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립적 재판기구라는 점에서 찾으려 하면서 단순화된 이론이 표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판사의 진솔함이 판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비판론자’는 판사들이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다.

	"판사에게 진술함이 요구되는가?"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현대의 민주국가] 판사의 판사에 강제력 부여 But 사법권 행사에 이유 밝혀야 함	
	*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판단 과정 을 분명히 드러내야 함	
	[반대론] 의 [목적]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	
	-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함	
	-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나옴	
	[반대론]의 [전제]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함 But, 민주주의 원리에 반함	
	[하지만의 하지만] 판사도 거짓말 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함	
판사는 법과 양심에	[근거] 판사에게 양심 = 법적 양심 [현상]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 재판해야 함	[반례]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려움	
	-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	
	[대응책 1] 판사가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함: 판사의 양심을 부정함	
	[대응책 2]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함	
시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도움이 되지 않음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 But,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술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함	
	-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다.	
	-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	
	[하지만의 하지만] 도덕의 딜레마와 진술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음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예시〉 분석	
비판론자:	"법 형식주의"	"법 이론주의"
판사의 진술함이 판사의	중립적 심판자로서 사안에 법을 그대로 적용	법은 곧 정치이고 판사는 법률 입은 정치인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으며, 판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의무	재판 중에 법 외적 고려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런 표현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	
	문제는 판사들이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립적 재판기구라는 점에서 찾으면서 단순화된 이론이 표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비판론자에게는 고상한 거짓말	

Phase 02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진술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술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판사는 으레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방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이다. 법원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술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되고 있다. 거짓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진술함으로도 이를 수 있다.

	“진술함의 중요성”
	1.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함
	[반례]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판사] -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
	-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함
	But,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 [더 심각한 경우: 문제상황]
	[큰 위험]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
	[해결책] 진술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됨
	: 거짓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진술함으로도 이를 수 있다.